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21(월)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요약

-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직접세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흡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함
 - 둘째,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음
 - 셋째,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는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넷째,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고,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음
- 조사대상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

한 공제·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 또한,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통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하여 미국·호주·영국의 경우 주요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고소득 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제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공제 혜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인 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의 운영으로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함
-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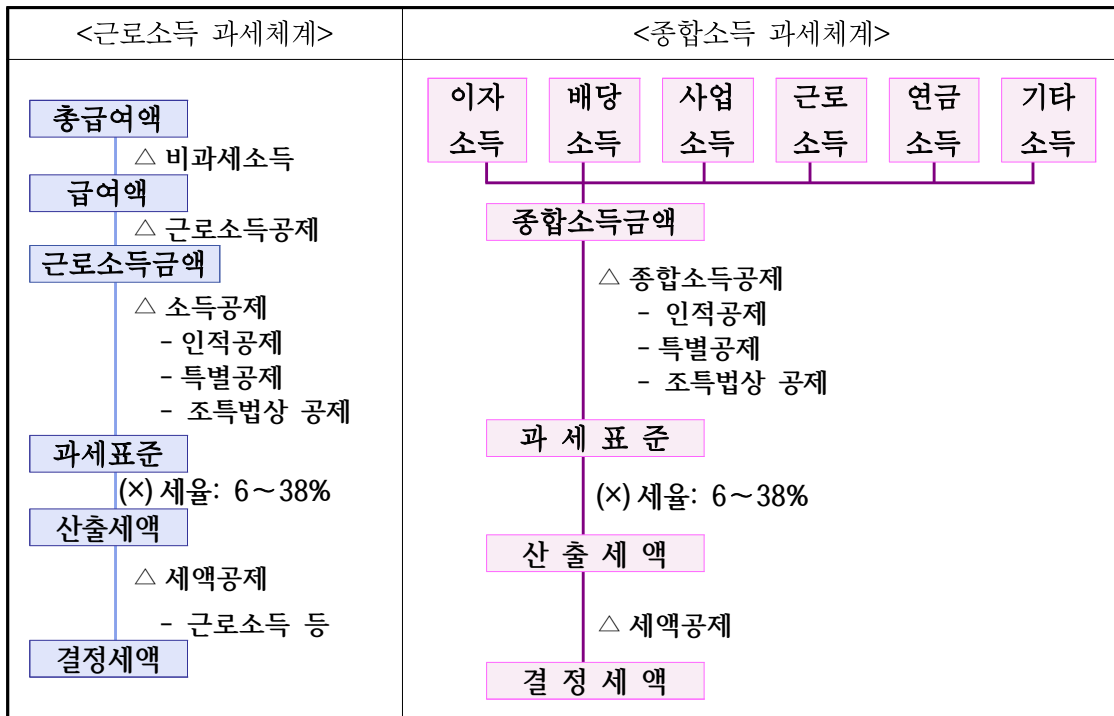
□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소득세제의 긍정적인 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정확한 기대효과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1. 소득세제의 특징

- 현행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¹⁾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5단계 초과누진세율²⁾이 적용되고 있음
-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로 신고체제를 이원화하여 운영함

<표 1-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세율구조는 6~38%인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최고소득세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2) 2012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인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함

4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율은 OECD 주요국보다는 낮고, OECD 회원국 단순평균 36%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1-2> OECD 주요국의 최고소득세율 비교(2012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OECD 단순평균
최고소득세율	38	40	35	50	45	45	45	36

자료: Data extracted on 31 Jul 2013 12:33 UTC (GMT) from OECD.Stat

-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소득공제 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음
 - 반면, 세액공제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됨

<표 1-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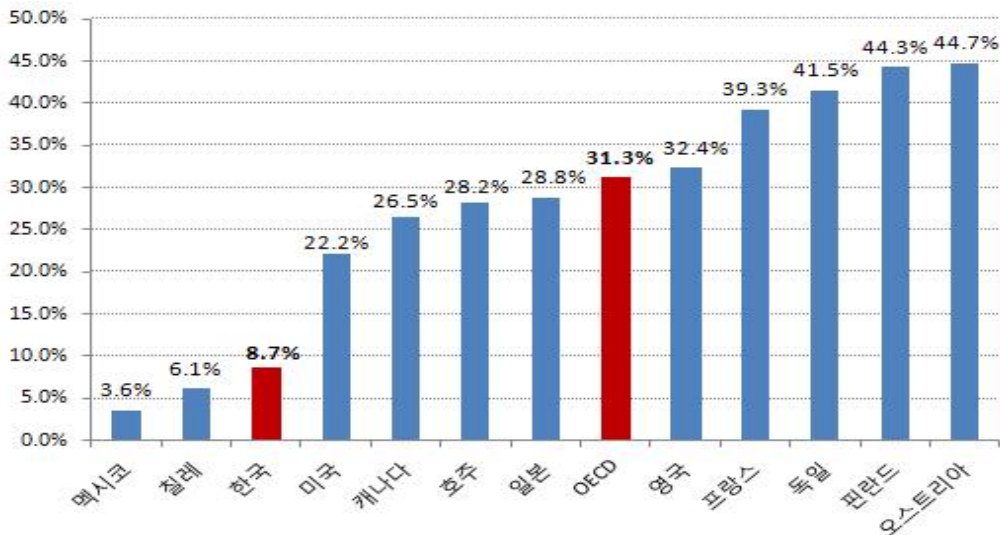
	소득공제				세액공제			
	甲(저소득자)		乙(고소득자)		甲(저소득자)		乙(고소득자)	
	소득공제 미적용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미적용	소득공제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 적용
소득금액	1,000	1,000	40,100	40,100	1,000	1,000	40,100	40,100
(-) 소득공제	0	100	0	100	0	0	0	0
↓								
과세표준	1,000	900	40,100	40,000	1,000	1,000	40,100	40,100
(×) 한계세율	6%	6%	38%	38%	6%	6%	38%	38%
↓								
산출세액	60	54	15,238	15,200	60	60	15,238	15,238
(-) 세액공제	0	0	0	0	0	15	0	15
↓								
납부세액	60	54	15,238	15,200	60	45	15,238	15,223
	세금절감 효과 6 =100×6%		세금절감 효과 38 =100×38%		세금절감 효과 15 =100×15%		세금절감 효과 15 =100×15%	

II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

1.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

-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 미국 22.2%, 호주 28.2%, 영국 32.4%와 비교시 매우 취약함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이유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하는바, 2010년 기준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 8.4%, 우리나라는 3.6%에 불과함

[그림 II-1] OECD 주요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³⁾,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⁴⁾,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⁵⁾으로 구분되

3)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이란, 조세를 통하여 개인 및 집단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함

4)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이란, 경제적 자원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함

5)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이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

6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며),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 직접세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 각종 공제 및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한 조세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나 소득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아짐
 - 과다한 공제·감면으로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간 실효세율이 차이가 커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소득세는 2011년 기준 국세 약 180.1조원 중 약 42.3조원을 차지하여 부가가치세 약 51.9조원⁷⁾, 법인세 약 44.9조원에 이어 세수규모가 가장 큰 3대 세목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관점에서 보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할 수 있음

2. 소득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영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간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적용받아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소득공제제도는 현 소득세제의 초과누진세율하에서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세금절감 효과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대상자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으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총급여

능을 의미함

6) Musgrave(1959), p. 5.

7)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후의 세수실적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차이는 약 51.7배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와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공제액 차이는 약 10.2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1> 소득공제로 인한 총소득 규모별 세금절감 효과(근로소득자)

(단위: 명, 원, 배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총급여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¹⁾		1인당 소득세 경감액 ²⁾	
		금액	배수 ³⁾	금액	배수 ³⁾
2천만원 이하	2,859,914	3,822,176	1.0	229,379	1.0
4천만원 이하	3,509,915	9,024,283	2.4	616,859	2.7
6천만원 이하	1,888,330	17,434,417	4.6	1,672,581	7.3
8천만원 이하	929,837	21,706,845	5.7	2,561,358	11.2
1억원 이하	385,026	24,375,051	6.4	3,396,000	14.8
2억원 이하	319,324	26,413,931	6.9	4,843,954	21.1
3억원 이하	21,797	27,954,316	7.3	7,265,960	31.7
3억원 초과	14,852	38,986,288	10.2	11,849,429	51.7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소득세 경감액 = 공제액 × 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현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되는바, 해당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는 배제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또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차이는 약 31.0배로 나타남

○ 반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와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공제액 차이는 약 6.0배로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차이 보다는 낮게 나타남

8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표 II-2> 소득공제로 인한 총소득 규모별 세금절감 효과(종합소득자)

(단위: 명, 원, 배수)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¹⁾		1인당 소득세 경감액 ³⁾²⁾	
		금액	배수 ³⁾	금액	배수 ³⁾
2천만원 이하	2,627,030	5,117,822	1.0	318,572	1.0
4천만원 이하	541,431	9,585,354	1.9	905,965	2.8
6천만원 이하	221,088	13,164,337	2.6	1,605,233	5.0
8천만원 이하	127,752	16,037,275	3.1	2,302,083	7.2
1억원 이하	75,088	17,320,957	3.4	2,862,215	9.0
2억원 이하	118,821	18,026,544	3.5	3,909,350	12.3
3억원 이하	28,765	19,623,466	3.8	5,347,328	16.8
3억원 초과	32,175	30,501,943	6.0	9,867,484	31.0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소득세 경감액 = 공제액 × 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각 구간 1인당 소득세경감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3. 비과세·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과다

- 소득세 감면규모는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국세감면규모는 2012년 약 29조 7,317억원으로 이 중 소득세 감면규모는 14조 612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
 - 명목세율이 10~40% 수준이었던 2001년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35% 수준과 비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소득세 감면액은 4.9조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35.4%를 차지하여 법인세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당초의 지원목적으로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또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사업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되는 결과가 초래됨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1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인의 36.1%로 2001년 44.2%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한편, 종합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및 현금영수증제도 등의 과표양성화정책으로 인하여 2001년 이후로 과세미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01년 52.6% 대비 약 50% 감소하여 26.2%로 나타남
- 즉, 소득과약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하여 종합소득자에 비하여 오히려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1-2] 국세감면액 및 과세미달자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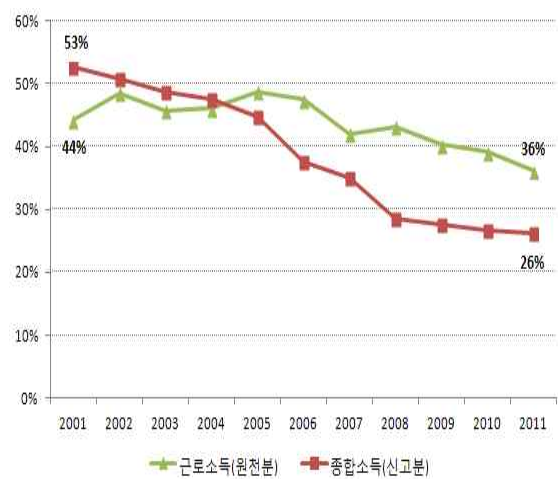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 조원)



<종합·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4.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과다

-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고,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자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크게 낮음
-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소득세 세율구조는 6~38%인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10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소득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단순평균 36%보다는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3.8%로 통계자료가 가용한 OECD 27개국 평균 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총소득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전체 평균 4.6%로,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 11.0%와는 큰 차이를 보임

<표 II-3>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과세표준구간	명목세율	실효세율	
		결정세액/총급여 ¹⁾	결정세액/과세표준
총 계		4.6%	11.0%
1,200만원 이하	6%	0.6% (5.4)	2.8% (3.2)
1,200만~4,600만원 이하	15%	3.7% (11.3)	8.2% (6.8)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9% (15.1)	14.4% (9.6)
8,800만원 초과	35%	19.9% (15.1)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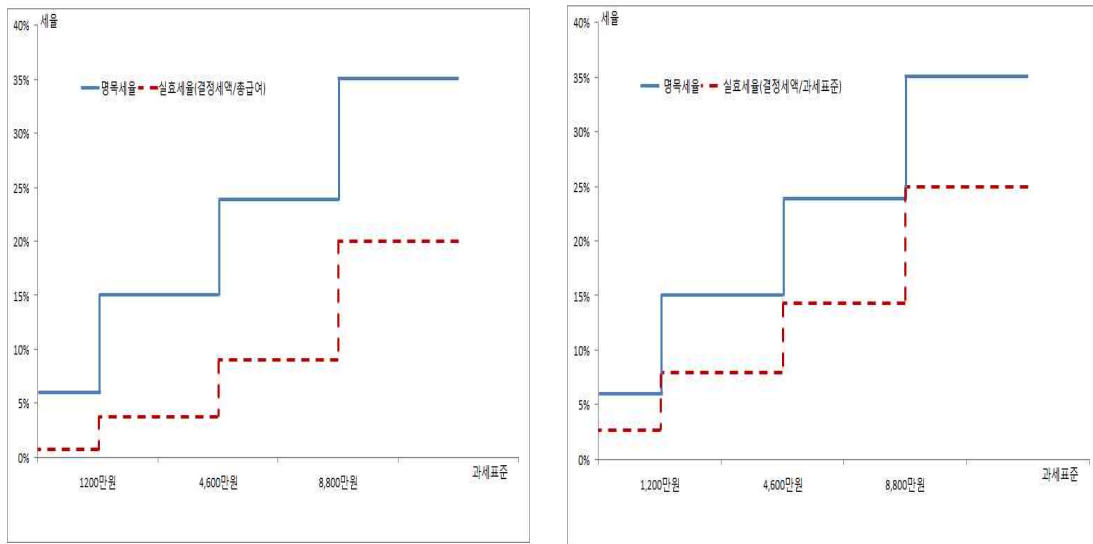
주: 1) 총급여=급여총계-비과세소득

1. (): 명목세율과의 차이(%p)

2.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바, 「결정세액/총급여」로 산출한 비율이 실효세율로 더 타당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그림 II-3]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 (2011년 귀속)



자료: 2012 국세통계연보

- 한편, 종합소득자의 「과세소득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 13.6%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 18.0%보다 4.4%p 낮게 나타남
- 종합소득자의 「과세소득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9%p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이원적 과세체계의 운영에 그 원인이 있음

<표 II-4>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과세표준구간	명목세율	실효세율	
		결정세액/과세소득 ¹⁾	결정세액/과세표준
총 계		13.6%	18.0%
1,200만원 이하	6%	2.0% (4.0)	5.1% (0.9)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6.5% (8.5)	9.1% (5.9)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11.5% (12.5)	14.1% (9.9)
8,800만원 초과	35%	23.7% (11.3)	25.4% (9.6)

주: 1) 과세소득(종합소득금액)=총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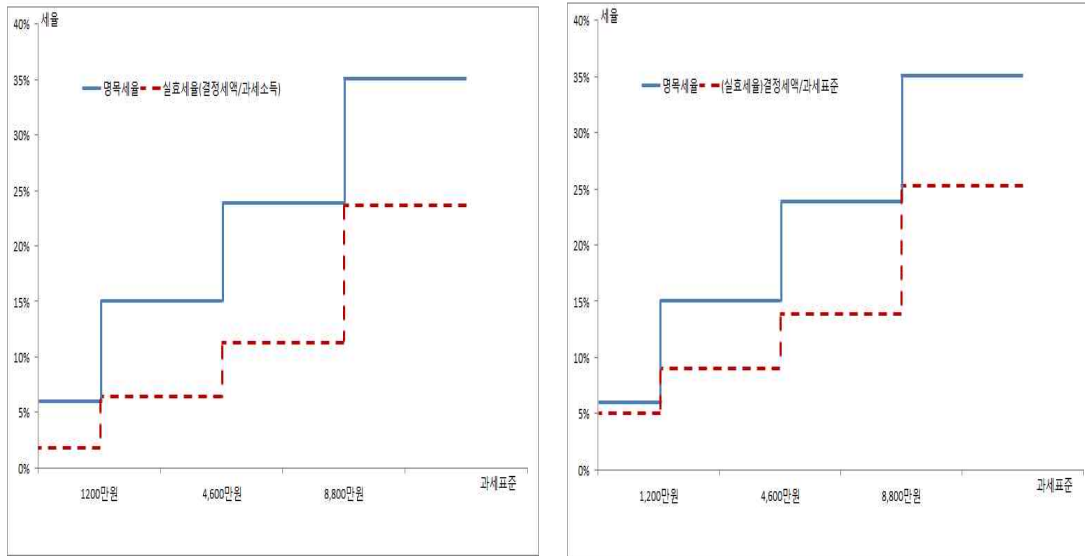
1. () : 명목세율과의 차이(%p)

2.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바, 「결정세액/총급여」로 산출한 비율이 실효세율로 더 타당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12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그림 II-4]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자료: 2012 국세통계연보

III

주요국의 소득세 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하여 4.8%p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는 한국이 3.5%로 OECD 평균 2.9% 대비 0.6%p 높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비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과 주요 세목의 세수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3%, 25.1%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4.6%, 33.8%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각각 5.3%p, 8.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 주요국의 GDP 대비 세수비중(2010년 기준)

(단위: %)

	조세부담률 ¹⁾	국민부담률 ²⁾	소득과세 ³⁾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과세 ⁴⁾
한국	19.3	25.1	7.1	3.6	3.5	8.2
미국	18.5	24.8	10.8	8.1	2.7	3.7
호주	25.6	25.6	14.6	9.9	4.8	6.6
영국	28.2	24.8	13.1	10.0	3.1	10.3
캐나다	26.3	31.0	14.5	10.8	3.3	7.0
뉴질랜드	31.5	31.5	16.9	11.9	3.8	11.7
OECD 평균	24.6	33.8	11.3	8.4	2.9	10.4

주: 1)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3)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as percentage of GDP

4)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as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 공제제도의 특징

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총소득(Total Income) 대비 각종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대부분은 독신자보다 자녀가 있거나 기혼가구가 받는 공제혜택이 크게 나타나며, 홑벌이 및 맞벌이 또는 맞벌이 중 자녀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 한국과 미국의 경우,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총소득 중 소득공제비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동일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비율은 맞벌이 자녀 2인 가구가 64.7%로 맞벌이 무자녀 가구 55.0%에 비해 14.7%p 크게 나타남

- OECD 평균의 경우 맞벌이 자녀 2인 가구가 35.5%로 맞벌이 무자녀 가구 29.8%에 비해 5.7%p 크게 나타남

14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표 III-2> OECD 주요국의 총소득¹⁾ 중 소득공제²⁾ 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OECD평균
전체가구	52.9	36.0	26.4	26.8	16.4	-	-	25.2
독신 무자녀	43.4	20.5	22.6	26.8	16.1	0.0	0.0	18.7
홀벌이 자녀 2인	60.3	56.9	22.6	26.8	15.9	0.0	0.0	27.0
맞벌이 ³⁾ 자녀 2인	64.7	42.7	33.9	26.8	17.0	0.0	0.0	35.5
맞벌이 ³⁾ 무자녀	55.0	30.7	33.9	26.8	17.3	0.0	0.0	29.8

주: 1) 평균임금소득(Average Wage)의 100%

2) Standard Tax Allowances: Basic allowance, Married or head of family, Dependent children, Deduction f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income taxes, Work-related expenses 등

3) 주된 소득자: 평균임금소득의 100%, 2차소득자: 평균임금소득의 33%

자료: OECD, Taxing wages 2013

□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비교시 우리나라는 모든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하고 있는바, 소득공제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음

○ 세액공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제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은 소득공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규모 이하 개인에게 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완함

- 반면, 영국·호주·캐나다의 세액공제 방식은 주로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대상금액에 단일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표 III-3> 소득세 공제방식 국제비교

공제제도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 적 공 제	본인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
	배우자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		
	고령자공제			소득공제		
	장애인공제			-		
특 별 공 제	보험료	-	환급형 세액공제	-	-	소득공제 ⁵⁾
	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¹⁾ (세액공제)	-	-	-	-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¹⁾ (세액공제)	-	-	-	-
	기부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소득공제 ¹⁾ (세액공제)	³⁾	소득공제 ³⁾ (세액공제)	소득공제 ⁴⁾ (세액공제)	-
	자녀양육	세액공제 ²⁾	세액공제 ²⁾	세액공제 ²⁾	세액공제 ²⁾	-

주: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되나, 기준소득금액 이하이면 소득공제 또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중 택일 가능

2) 기준소득금액 이하 자에게만 환급가능 세액공제 적용(즉, 고소득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기준소득금액 이하이면 기여금 중 일부를 세액환급

4) 일반적인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 다만, 고용보험법령 및 캐나다 연금 계획(Canada Pension Plan)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

5)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손해보험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만 해당함

자료: IBFD; 각국 국제청 홈페이지

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제도

□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통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공제는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16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 와 아동빈곤 예방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CTC)가 있음
- 미국·호주·영국은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 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음

<표 III-4> 주요국의 운영사례 요약

유형 국가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	기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항목별공제¹⁾ 및 인적공제²⁾금액 제한³⁾ - 교육비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⁵⁾ -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EITC 제도 운영 - 자녀장려세제: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를 위해 CTC 제도 운영 <p>*근로소득 요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저축세액공제제도 운영¹⁰⁾ •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 • 연간 USD 1,000 한도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연로자 및 연금소급자 세액공제, 고령근로자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의료비 세액공제: AUD 2,060(2011-12) 초과 의료비에 2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⁶⁾ - 자녀장려세제: 자녀를 가진 중산층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FTB 제도 운영 -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WC⁷⁾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동분담 제도 운영 •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 점감 • 0% 세율구간 및 저소득층 세액공제 규정으로 인해 연소득이 AUD 6,000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본인공제 - 부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부부공제: 공제대상금액에 소득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⁷⁾ -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를 위해 WTC 제도 운영 - 자녀장려세제: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CTC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세금이 없어도 자신이 납입하는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해 연간 GBP 720까지 세액 환급 •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

유형 국가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단일세율 세액공제 방식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	기타
캐나다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대상금액에 개인의 소득세 최저세율인 15%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⁸⁾ - 자녀장려세제: 중산층 이하 자녀의 가구를 위해 CCTB 제도 운영 - 근로장려세제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WITB 운영 - GST/HST 공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GST 및 HST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반비례하여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 금액 감소
뉴질랜드	n/a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⁹⁾ - WfFIC 운영 ① FTC: 자녀양육비지원 ② IWTC: 근로장려세제 ③ MFTC: 생계소득지원 ④ PTC: 자녀출생시 지원 		

- 주: 1) 의료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득세 및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이자 및 투자이자, 기부금, 상해 및 절도손실 등
- 2) 개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자녀 및 친척)
- 3) 2010~2012년간 폐지되었으나, 2013년 다시 적용
- 4) 보조금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세액공제제도
- 5) Earned Income Credit, Child Tax Credit
- 6) Family Tax Benefi, Working Credit
- 7)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 8) Canada Child Tax Benefit, 저소득 가구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기본급여에다 추가하여 NCB(National Child Benefit) 및 CDB(Child Disability Benefit) 지급, Working Income Tax Benefit, Goods and Services Tax(연방정부 소비세), Harmonized Sales Tax(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세원을 갖고 있는 소비세)
- 9)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Parental Tax Credit
- 10)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가 401(k) 계획에 가입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세액공제, 고용주의 매칭자금 제공까지 삼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V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공제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의 격차 비교 등을 기반으로 양극화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세액공제제도 중심의 공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 고소득층의 Phase-out Rule 적용방안
 -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방안

1.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

- 소득공제제도는 과세표준 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세액이 경감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체계로 인하여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음
 -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바, 이와 같이 세액공제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기 때문임⁸⁾
 -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8) A number of OECD countries have replaced tax allowances by tax credits in recent years. The main argument in favour of tax credits is that they are of the same value for all taxpayers (if they pay a sufficient amount of taxes), whereas the value of tax allowances increase with income in tax systems with progressive tax rates.(OECD(2006), p. 62)

기능이 매우 미흡한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효과적인 세액공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책대상과 정책목적의 우선순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소득계층별로 공제혜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소득공제 항목을 우선적 고려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음
 -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소득세 감면액으로 살펴 본, 소득계층 간 공제혜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소득공제항목은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나타남
-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음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시 세액공제율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중 가장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확정신고인원 중 90% 이상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율은 15%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해외 주요국 중 영국과 캐나다가 소득세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고소득층 Phase-out Rule 적용

-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그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간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바,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호주·영국은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 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고 있음
 - Phase-out Rule을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로 도출된 점감수준을 정하는

방안으로는 ① 최대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설정 후 실제 공제지출금액을 허용하는 방식, ② 공제 가능한 소득구간 내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차감하는 방식, ③ 세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단일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을 제시해 볼 수 있음

3.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

-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도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즉,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의 확대 및 도입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고 현금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됨
 -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음

V 주요국의 소득세 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소득세 개편안은 과세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처럼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함에 따라 소득세 공제체계의 변화를

- 가져온바,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함
-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중산층 지원을 목적으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며,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세액공제율 12%로 설정하여 전환함
 - 인적공제 중 다자녀, 자녀양육비, 출산·입양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무적 납부 및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

<표 V-1> 각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종 류			세액공제 전환 여부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 경로자공제	△		2014년 이후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 ¹⁾			
	· 자녀양육비공제	○	자녀세액공제 ²⁾		
	· 출산·입양자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세액공제율 12%	
		· 퇴직연금	○		
특별공제	항목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율 15%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 교육비		
			· 주택자금	△	2014년 이후
			· 기부금	○	세액공제율 15%
표준공제			○	표준세액공제 ³⁾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공제		○	세액공제율 1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2014년 이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소득공제					

주: 1) 한부모 소득공제 2013년 신설

2) 자녀세액공제: 자녀 2인 이하의 경우 1인당 15만원, 2인 초과 1인당 20만원

3)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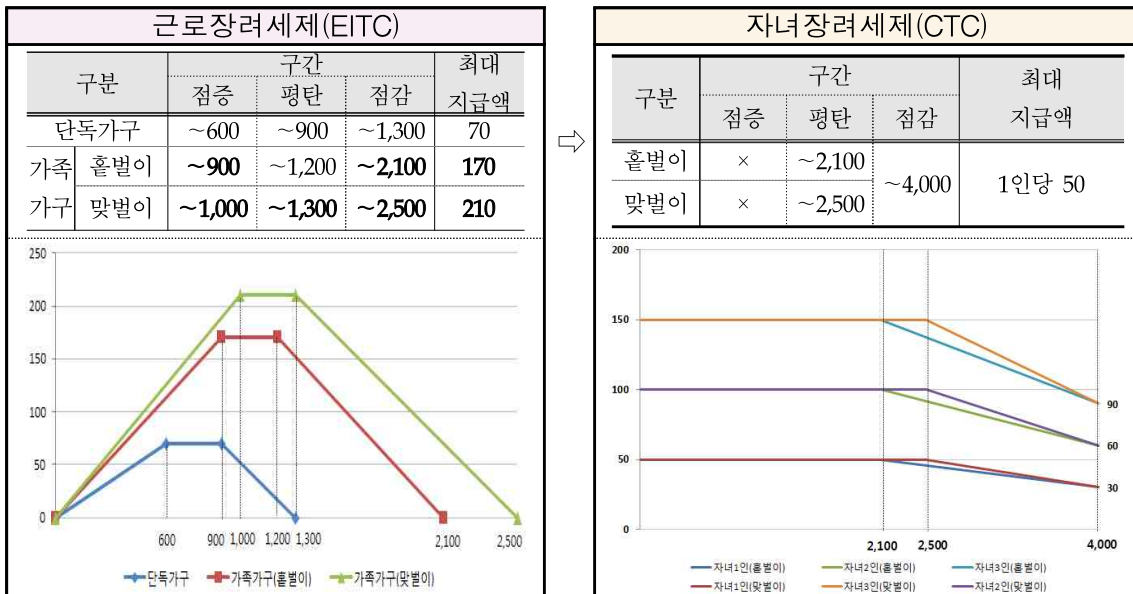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자녀 기준에서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전환하고,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구간 및 지급액 수준을 확대함
 -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함

<표 V-2>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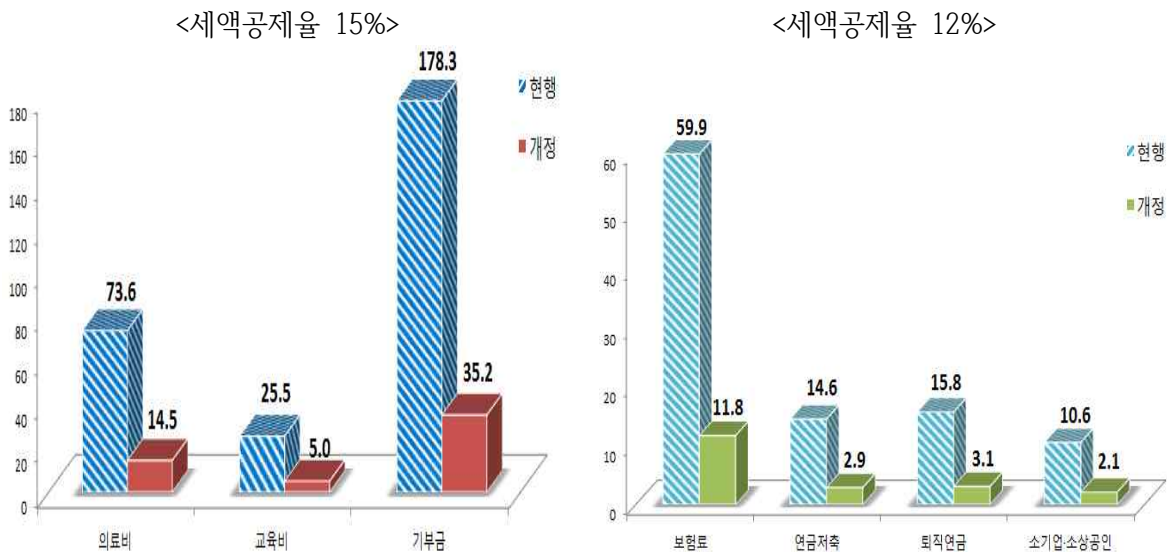
2.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가.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본 효과

- 2013년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바,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살펴 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차이는 크게 축소되어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를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시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세금절감혜택 차이는 의료비 73.6배→14.5배, 교육비 25.5배→5.0배, 기부금 178.3배→35.2배로 크게 감소함
-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되는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효과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차이가 보험료 59.9배→11.8배, 연금저축 14.6배→2.9배, 퇴직연금 15.8배→3.1배, 소기업·소상공인 10.6배→2.1배로 크게 감소함

[그림 V-1] 세법개정 전·후 세액공제 전환항목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배수 비교(2011년 기준)



주: 1. 개정 전·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및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배수 비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과세미달자 제외
 3. 보험료 공제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나,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나.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로 본 효과

- 2013년 세계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세전 및 현행 세법 적용시 지니계수보다 감소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안 반영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 EITC 확대 및

24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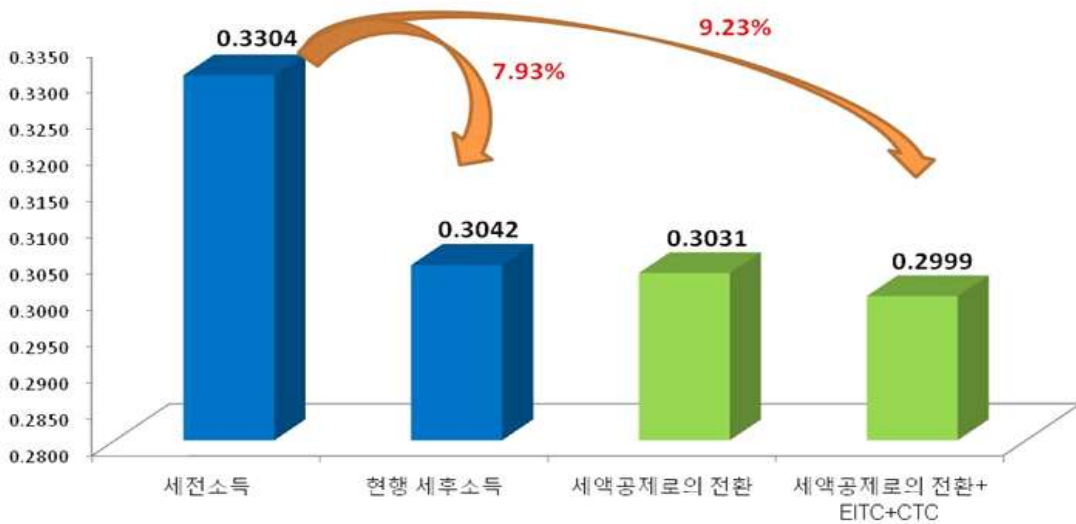
CTC 도입을 고려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 지니계수 0.3304 대비 각각 8.26%, 9.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V-3>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통계청, 근로소득자가구)

		현행세법 지니계수		개정세법 지니계수	
		세전	세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 EITC·CTC
지니계수		0.3304	0.3042	0.3031	0.2999
변화율(%)	세전 대비	-	-7.93	-8.26	-9.23
	세후 대비		-	-0.36	-1.41

주: 2012년 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그림 V-4]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근로소득자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항목 중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를 반영)하여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2013

9) 장애인공제,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영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향후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율을 15%로 가정하고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

년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미미하지만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에서 0.3029로 감소율이 약 0.06%p 더 크게 나타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음

<표 V-4>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의 전환항목을 반영한 지니계수 변화

	소득재분배 효과		세전소득 대비 변화율	
	2013년	2014년 이후	2013년	2014년 이후
현행 세전소득	0.3304		-	
세후소득	0.3042		-	
개정 세후소득	2013년	2014년 이후	2013년	2014년 이후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0.3031	0.3029	-8.26%	-8.32%
+ EITC·CTC	0.2999	0.2997	-9.23%	-9.29%

가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 김낙년,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2013. 0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10.
- _____,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 10.
- 김재진,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 영국사례(Working Tax Credit 및 Child Tax Credit제도) -』,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 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05.
- 유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주OECD대표부, 「OECD 국가의 조세정책과 행정 -OECD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2010. 07.
-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2010. 12.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1년 국민계정(잠정)」, 2011. 03.
- 행정안전부, 『2012 지방세정연감』, 2012.
-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ation Statistics 2009-10”.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FY 2011-2012.
- IRS, Publ. 936, “Hom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2011.
- _____, Publ.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2012.
- _____, Publ. 972, “Child Tax Credit: For use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 _____, Publ. 524,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2012.
- _____, 2012 Instructions for Schedule A(Form 1040)-Itemized Deductions.
-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13.
- Musgrave, A. Richard,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 2012.
- OECD, No. 13,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2006.
- _____,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No. 92", 2012.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11", 2012.

www.cra-arc.gc.ca

www.fin.gc.ca

www.hmrc.gov.uk

www.irs.gov

www.ibfd.org

www.nts.go.kr

www.oecd.org

www.ecos.bok.or.kr

www.humanservices.gov.au

작성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29)